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57-1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4년 연구보고서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연구

2025. 3.



<https://sri.kostat.go.kr>



9 772288 116605 08
ISSN 2288-1166(Print)
ISSN 2733-4120(Online)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17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연구

한승훈



Statistics Korea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발간사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통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통계는 정책 수립과 평가, 기업 경영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에 국가통계연구원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국가통계의 질적 향상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고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국가통계의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연구보고서에는 국가통계 생산 방식의 혁신과 데이터 활용도 강화를 목표로 한 다양한 연구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국가통계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체계 연구를 통해 최신 AI 기술을 통계 생산 과정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025 인구주택총조사 모바일조사포 사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생산조사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국제적 농업 통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통계생산 시스템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통계 작성 방법과 관련해서는 비확률표본을 위한 통계적 추론 연구를 통해 응답자 편의를 제고하고 통계 생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범죄분류체계의 국내 범죄통계 활용 연구, 국내 안전영역 통계·데이터 동향 연구는 안전 및 범죄 분야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ESG DB 확대 및 활용방안 연구, SDG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지표체계 개선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 및 ESG 관련 통계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습니다. 국내 삶의 질 연구동향 분석,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 삶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연구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와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인구 주요 지표 서비스 방안 연구, 기후변화대응 평가 지표에 관한 국제 동향 연구 등을 통해 국가통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년 2월부터 새롭게 출발한 국가통계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통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최신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책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국가통계연구원이 국가통계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통계 생산자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힘써준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3월

국가통계연구원장

가진

목 차

제1장 서론	1
제2장 연구방법	3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3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7
제3장 임금근로자의 통근 규모와 특성	9
제1절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	9
제2절 임금근로자의 통근권 간 이동	12
제3절 가구의 특성과 성별 통근을 비교	14
제4절 소결	14
제4장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과 특성	16
제1절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	15
제2절 임금소득의 통근권 간 이동	19
제3절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 비교	21
제4절 소결	22
제5장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과 지역경제 영향	24
제1절 개요	24
제2절 지역별 임금총액 비중과 순위	25
제3절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과 순위	27
제4절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과 순위	29
제5절 소결	31
제6장 연구결과와 시사점	32
참고문헌	34
Abstract	35

요 약

2024년에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도입한 지역활동인구는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기준의 취업자 개념이 포함돼 있어, 기존의 거주지 기준 취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취업자의 지역 간 유입과 유출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소득통계에서는 생산단위와 가계의 거주원칙에 따라 지역내총생산(GRDP)은 사업체 소재지, 지역총소득(GRNI)은 임금근로자 거주지 기준의 피용자보수를 작성하기 때문에 두 피용자보수 간 차이로 피용자보수의 지역 간 이동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해,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 작성방법과 지역소득통계의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통계 작성방법을 결합하여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였다.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도지역이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통근권을 형성했다. 울산은 임금근로자가 대경권으로 순유출되고, 부산경남권에서 순유입되어 통근권으로 묶지 않았다. 수도권은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서울로 순유입되고, 비수도권은 광역시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도지역으로 순유입되었다. 임금근로자가 거주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주여건이 좋은 곳에서 거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근권 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동이 가장 많았고, 임금근로자는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순유입되고, 임금소득은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간 이동이 많은 이유로 교통 접근성과 지식산업의 높은 비중이 제시된다. 통근근로자(76.2%)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77.6%)은 대부분 수도권 내 시도 간에 발생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의 통근율이 높은 가운데, 남녀 모두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없는 경우보다 통근율이 높았다. 통근권별로도 수도권에서 무배우자 여성이 유배우자 여성보다 통근율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했다. 비통근근로자에 비해 통근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더 많았는데, 이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 등의 통근율이 더 높는데 기인한다.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과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의 차이가 발생해, 전국 대비 시도별 임금소득 비중과 시도 간 순위가 바뀔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지표 간 관계를 고려해서 지역통계 지표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용어: 통근, 임금소득, 지역 간 이동, 지역통계지표

제 1 장

서 론

통계청은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부터 지역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기준 취업자를 포함한 지역활동인구를 작성하여 공표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역 내 경제활동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공표 내용은 지역활동인구 현황,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규모와 비중, 거주지 내 통근 취업자, 근무지 기준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비중이다. 지역활동인구 개념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근무지 기준 고용현황에 대해 근무지 및 거주지 기준 지역별 현황과 취업자 규모 및 비중을 공표했다. 지역활동인구 도입으로 근무지 기준 근로연령인구(15세 이상 인구), 거주지와 근무지 간 취업자 유입과 유출인 통근, 지역 고용 특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표 1-1> 15세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분류와 지역활동인구의 개념

기존의 15세 인구의 경활 상태		지역활동인구	
거주지 기준		거주지 기준	근무지 기준
실업자	취업자 (비통근취업자+ 타지역으로 유출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비통근취업자+ 타지역에서 유입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이와 유사하게 지역소득통계에서는 임금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체 소재지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의 피용자보수를 작성하고, 임금근로자의 거주지 기준으로 지역총소득(GRNI)의 피용자보수를 작성한다. 사업체는 지역내총생산에서 투입요소인 노동이 기여한 만큼 임금근로자에게 피용자보수를 지급하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피용자보수는 지역총소득에서 임금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지급받은 피용자보수가 된다.

지역고용통계의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과 지역소득통계의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은 모두 주거지와 근무지의 불일치 즉 직주불일치에 기인한다. 해외 부문을 제외하면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의 유입에서 유출을 제외한 순유입의 전국 합계는 '0'이 되어, 국내총생산(GDP), 지역내총생산(GRDP), 국민총소득(GNI), 지역총소득(GRNI)의 피용자보수는 같게 된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는 임금소득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다른 경우 순유입이 '0'이 되지 않아, 주거지 기준 지역통계와 근무지 기준 지역통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통계에서 이러한 불일치는 고용통계에서는 통근, 소득통계에서는 소득의 지역외유출이란 주제로 각각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고용통계와 지역소득통계 작성 방법을 연계하여 임금근로자의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같이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통근은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얻는 가장 큰 장점은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지역 간 표를 작성할 수 있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유입과 유출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작성된 지역 간 표를 통해 지역 간 관계를 반영한 노동시장권 설정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개인 특성, 가구 특성, 일자리 특성별로 통근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분석하거나, 통근근로자와 비통근로자를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장에서는 연구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연구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검토한 관련 통계, 기존 연구, 분석자료인 지역별고용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기술한 뒤, 연구방법을 서술하고자 한다. 3장에서 임금근로자 통근 규모와 특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 기준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시도 단위로 분석하고, 시도 간 통근권을 광역권 단위로 묶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구 특성과 성별에 따른 통근율의 차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규모와 특성을 분석한 후, 통근근로자와 비통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5장에서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총액,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과 15세 인구의 1인당 임금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2 장

연구방법

제1절 기존 연구 검토

1. 통근 정의에 대한 연구

통근 관련 기존 연구에서 통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통근에 대한 정의는 연구에 이용한 자료원에서 통근을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자료원에서 거주지와 근무지인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이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동했는지, 언제 이동했는지 그리고 이동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통근에 대한 정의가 달라진다.

<표 2-1> 자료원별 통근 정의

자료원명		작성주기	정의
조사 통계	지역별고용조사	반기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5년	평소 자기집 밖에 있는 직장(근무지)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
	지역사회조사	2년	평소 실제 통근
	생활시간조사	5년	10분 동안 실제로 가장 오래한 행동과 장소
	국가교통조사	5년	평소 실제 통근
빅데이터	통근근로자이동특성분석*	연간	6월 기준 실제 이동
등록DB	인구DB, 사업장 DB	연간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통계등록부와 SK텔레콤 모바일 이동정보를 활용한 실험통계로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공표

인구주택총조사와 지역사회조사, 국가교통조사는 조사시점이 아니라 평소를 기준으로 주거지와 근무지 간에 취업자의 이동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를 통근으로 본다.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이동정보를 이용한 통근근로자 이동특성 분석과 생활시간조사는 조사시점에서 취업자의 통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통근으로 정의한다. 지역별고

용조사와 등록DB의 경우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으로 본다.

거주지와 근무지 간 실제 이동을 전제로 할 경우 재택근무는 통근에서 제외되나, 실제 이동 여부에 상관없이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재택근무가 통근에 포함된다. 평소 개념을 사용할 경우 평소 직장으로 통근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확진으로 인한 입원 치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통근으로 조사한다(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서). 조사시점에서의 이동을 전제로 통근 개념을 정의한다면, 평소에 통근을 하더라도 조사시점에 일시적인 입원 치료, 재택근무의 경우 통근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이동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통근 여부의 범위가 달라진다. 가장 넓은 범위는 재택근무를 제외한 모든 취업자는 통근으로 정의된다. 공간적 범위를 읍면동, 시군구, 시도, 광역권으로 넓혀갈수록 통근 규모는 감소한다. 해외 부문을 제외한다면, 전국에서는 통근 취업자가 '0'이 된다.

자료원별로 통근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따라 이용할 자료원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면 기준 시점에서의 실제 통근 개념이 적합할 것이다. 일시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에 따른 동향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평소 통근 개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교통 흐름과 교통량이 연구주제라면 취업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통근 자료원이 적합할 것이다. 본 연구와 같이 지역 간 소득 이동이 연구주제라면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자의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근무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으로 정의하는 지역별고용조사와 등록DB가 연구목적에 맞다. 다만 등록DB의 경우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다사업체의 실적을 신고하거나, 본사에서 지사 실적을 모아서 신고하는 등 근무자가 실제 신고한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1기업 1사업체만 분석하고,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종사자의 경우 행정신고 사업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하기도 한다(통계개발원, 2023).

자료원별 통근의 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광역통근권인 노동시장권은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4+3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지역별고용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행안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형태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권역도 유사하다. 다만 현재 부울경권에 대한 특별자치단체 추진과정에서 울산이 빠지고, 부산과 경남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인 통근을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로 정의한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유엔(UN)의 국민계정 작성지침과 유럽통계국(Eurostat)의 지역계정 작성지침은 거주원칙에 따라 생산단위 또는 가계가 거주하는 지역에 경제적 거래를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거주원칙에

의해 경제활동이 발생하는 사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총생산이 추계되고, 지역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추계된다. 따라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연계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 통근을 주거지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로 정의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증가하더라도, 통근율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역별고용조사 하반기 조사결과를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보면 통근율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연도별 통근율과 지역 간 임금소득 이동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통근율	14.3	14.5	14.3	14.5	14.6
임금 이동률	17.7	18.0	17.8	18.1	18.2

자료: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2. 임금소득의 정의와 지역 외 유출 연구

기존 연구에 활용된 자료원별로 임금소득에 대한 정의는 조사대상 기간, 포괄범위 및 사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조사하느냐 아니면 임금근로자가 받은 임금을 조사하느냐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기간은 월간과 연간으로 나눌 수 있다. 월간의 경우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6월 임금, 일자리행정통계는 1년간 월평균 임금,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임금을 조사한다.

임금소득의 포괄범위는 현금과 현물 급여를 모두 포함한다. 국민소득통계와 지역소득통계에서는 임금소득에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 부담금을 더한 피용자보수 개념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2년 기준 국민소득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용자보수에서 고용주 부담 사회보험 부담금은 약 14.7%를 차지한다.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과정의 특성 때문에 특정 임금근로자가 제외되거나,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중 일부가 제외되기도 한다. 일자리행정통계의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인 학자금, 식대,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등이 제외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와 소규모 농가 근로자 등의 취약 근로자도 제외된다. 행정통계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등이 제외되지만, 가구조사는 고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이 과소 응답되는 편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임금소득은 가구조사일 경우는 가구 또는 임금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이고, 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경우는 사업체가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조사된다. 전국 수준에서는 사업체 지급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령 임금이 일치한다. 그러나 지역 수준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임금소득이 지역 간에 유입과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수준에서는 사업체 지급 임금과 임금근로자 수령 임금이 불일치한다. 지역별 임금소득의 순유입과 순유출 임금소득의 전국 합계는 ‘0’이 되어 전국 수준에서는 두 소득이 일치하게 된다.

<표 2-3> 자료원별 임금소득 정의

자료원명		조사대상	정의
가구 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월평균 총수령액, 각종 상여금 및 현물 등 포함(세금공제전)
	가계금융복지조사 (행정자료 보완)	연간 가구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현금과 현물 보수(세금·각종부담금 공제전)
사업체 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현금 및 현물 등) ※사업체노동력조사는 고정상여금만 포함, 고용형태별은 변동상여금도 포함
	사업체노동력조사	매월 임금총액	
행정 통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12월 일자리를 차지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고용주가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보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제외됨 (학자금, 식대,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일부 취약근로자 (소규모 농가근로자 등)는 제외됨
	국세통계	연간 근로소득	급여총계와 과세대상 근로소득
가공 통계	국민소득통계 (한국은행)	연간 전국 피용자보수	임금과 급여+현물급여+고용주부담 사회부담금
	지역소득통계 (통계청)	연간 지역별 피용자보수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은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 지역연구원에서 ‘역외소득유출’이란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국민계정과 지역계정에서 소득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구분된다. 소득의 역외유출 원인으로 타지역으로부터의 통근인구 증가와 지역 외 본사가 흔히 언급되는데, 이는 통근인구는 피용보수의 역외유출을 의미하고, 지역 외 본사는 역내 영업이익의 역외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한국은행, 2023). 지역별 역외유출규모는 지역총생산에서 지역총소득을 차감하여 구하는데, 그 이유는 지역소득통계에서 지역총소득을 지역내총생산에서 지역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하여 구하기 때문이다. 즉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의 합이고,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이 ‘0’보다 크면 해당지역으로 소득이 순유입된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다른 지역으로 소득이 순

유출된 것이다. 지역소득통계에서 지역총소득(GRNI)은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구분하여 공표하지만, 지역총생산(GRDP)의 경우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총생산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로 나누는 작업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산업연관표인 지역투입산출표를 이용해 지역총생산에서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 비율을 구한 다음, 지역소득통계의 지역총생산에 이 비율을 곱해 지역별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추계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을 구한 다음 두 소득을 차감하여 지역별 피용자보수의 지역외 유출 규모를 추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소득 이동 규모에 대해 지역별 총액만 추계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지역 간 표를 작성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고용조사라는 단일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지역별 임금소득의 총액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임금소득이 유입되고 유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2-4> 기존 연구 지역별 표와 본 연구의 지역 간 표

	서울	~	제주	
지역외유출				
		지역활동인구(근무지)		
		서울	~	제주
거주지	서울			
	~			
	제주			

제2절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22년 하반기 기준 지역별고용조사이다. 지역별고용조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첫째, 임금근로자와 지역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연계해서 분석하려면 실제 이동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체 소재지가 다른 경우를 통근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별고용조사에는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필수 변수인 거주지역, 사업체 소재지 그리고 월평균 임금소득 자료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단일 자료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별 이동 집계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지역 간 표 작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2-5> 지역고용조사의 개인, 가구, 일자리 특성 변수

부문	조사문항(변수)
개인특성	거주지역, 성별, 연령, 교육정도
가구특성	1인가구 여부, 배우자 유무, 18세 미만 자녀 수 등
일자리특성	근무지역, 근속기간, 실제 근로시간(전일제와 시간제), 산업분류, 직업분류, 종사자규모, 종사상 지위, 기간제 여부, 월평균 임금

본고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지역활동인구와 지역소득통계의 지역외소득유출 접근방법을 연계해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연구한 것이다. 두 통계의 접근방법을 연계함으로써,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유입과 유출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간 표를 작성하고, 이러한 지역 간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산정할 수 있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사업체 소재지를 조사한다. 그러나 월평균 임금은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조사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표 2-6> 지역별고용조사와 지역소득통계의 임금소득 작성 기준

	근무지(사업체 소재지) 기준	거주지 기준
지역별고용조사	지역활동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역거주 임금근로자의 임금
지역소득통계	지역총생산의 피용자보수	지역총소득의 피용자보수

제 3 장

임금근로자의 통근 규모와 특성

제1절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을 유입과 유출로 나누어 작성한 지역 간 표가 <표 3-1>이다. 이 표의 대각선 칸의 값은 임금근로자의 거주지와 근무지가 같은 비통근 근로자 규모이고, 그 외는 다른 시도로 이동한 임금근로자 규모이다. 거주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각선 외 칸의 값은 사업체가 소재한 다른 시도로 유출된 통근근로자의 규모이고, 근무지 기준에서는 사업체 소재지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통근근로자 규모를 나타낸다.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통근근로자는 거주지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통근근로자를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으로 유입된 통근근로자는 근무지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비통근근로자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임금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을 서로 차감하여 순유입과 순유출 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시도별로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정리한 표가 <표 3-2>이다.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에 대한 지역 간 표에서는 시도별 임금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총량 정보 외에 시도별로 어느 시도로 유출되고, 어떤 시도에서 유입되었는가에 대한 시도 간 이동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은 하나 또는 두 개의 거점도시와 인접한 도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거점도시와 도지역이 하나의 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 다른 시도와 통근권을 형성한 지역은 원래 같은 도지역에서 특광역시나 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상 분할된 곳이다. 이러한 행정구역 분할이 없는 강원, 전북, 제주는 다른 시도와 통근권으로 묶이지 않는다. 통근권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로 구분할 수 있다. 울산을 부산, 경남과 함께 부울경권으로 묶지 않은 이유는, 울산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부산경남권(11천 명)보다는 대구경북권(15천 명)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울산에 근무하는 임금근로자는 대구경북권 거주자(3천 명)에 비해 부산경남권 거주자(32천 명)가 더 많아 어느 지역과 통근권을 형성한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통근권을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로 묶었을 때, 통근권 간 유의미한 임금근로자의 유입과 유출이 서로 인접한 수도권과 충청권 간 및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울산 간에 발생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표 3-1>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 규모

(단위: 천 명)

			지역활동 임금근로자(사업체 소재지)																합계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거주 인구 미만 근로자	수도권	서울	3,564	66	534	3	5	6	12	1	1	2	1	0	1	-	6	2	-	4,203	
		인천	178	954	197	0	0	1	2	0	0	0	-	0	0	-	0	-	-	1,333	
		경기	1,188	121	4,762	6	5	16	45	1	1	1	1	2	0	0	8	1	-	6,157	
	충청권	대전	4	0	1	577	20	17	31	1	0	0	1	-	-	-	0	2	-	655	
		세종	2	0	2	29	103	13	14	0	0	0	0	0	-	-	0	1	-	165	
		충북	2	0	8	6	8	634	8	-	0	0	0	-	0	-	3	0	-	670	
		충남	7	1	23	9	8	5	816	0	0	0	0	0	0	-	-	1	-	871	
	광전권	광주	0	-	1	0	-	0	0	523	63	0	-	-	-	-	-	-	4	-	592
		전남	0	0	0	0	-	-	0	20	596	0	-	0	2	-	0	2	-	621	
	대경권	대구	1	0	0	-	-	-	-	0	-	853	107	1	7	0	-	0	-	970	
		경북	1	-	0	0	0	1	0	0	0	37	894	1	2	3	0	0	-	939	
	부경권	부산	0	-	0	-	-	-	-	0	0	0	2	1,168	93	21	-	-	-	1,286	
		경남	1	-	-	1	-	0	-	0	1	2	1	76	1,124	11	0	0	-	1,217	
			울산	0	-	0	-	-	0	0	-	-	0	15	7	4	463	-	-	-	490
			강원	5	0	10	0	0	3	-	-	-	1	-	0	0	572	0	-	-	591
			전북	1	-	-	1	0	0	4	1	3	-	-	0	-	-	634	-	-	645
			제주	-	0	0	-	-	0	-	-	-	-	-	-	-	-	-	-	280	280
	합계			4,952	1,144	5,540	632	148	698	932	547	667	896	1,023	1,255	1,233	499	588	648	280	21,684

주)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은 반올림으로 인해 단위 미만을 나타냄

은 지리적 인접성 외에 교통 편의성과 산업구조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2023)은 충북과 충남 피용자보수의 순유출 원인으로 수도권과의 교통 편의성과 지식산업 사업체의 높은 비중 등의 영향으로 통근 근로자수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대전과 세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울산은 거제나 통영 등의 지방의 다른 공업도시와 달리 단일 생산물이 아니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란 여러 종류의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 각각의 산업구조의 차이에 의해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충남(4천 명), 광주(1천 명), 전남(3천 명)에서 근무하고, 광주(4천 명)와 전남(2천 명) 거주 임금근로자가 전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임금근로자의 시도별 이동 현황

(단위: 천 명, %)

시도	임금근로자규모		통근규모			통근율		통근비중	
	주거지 ①	근무지 ②	유출 ③	유입 ④	순유출 ③-④	유출률 ③/①	유입률 ④/②	유출	유입
수도권	11,694	11,636	2,414	2,356	58	20.6	20.2	76.2	74.4
서울	4,203	4,952	640	1,389	-749	15.2	28.0	20.2	43.9
인천	1,333	1,144	379	190	189	28.4	16.6	12.0	6.0
경기	6,157	5,540	1,395	778	618	22.7	14.0	44.1	24.6
충청권	2,360	2,411	230	281	-51	9.7	11.6	7.3	8.9
대전	655	632	77	55	22	11.8	8.7	2.4	1.7
세종	165	148	62	46	16	37.6	30.8	2.0	1.4
충북	670	698	36	64	-28	5.3	9.1	1.1	2.0
충남	871	932	55	116	-61	6.3	12.5	1.7	3.7
광전권	1,213	1,214	94	96	-1	7.8	7.9	3.0	3.0
광주	592	547	70	25	45	11.8	4.5	2.2	0.8
전남	621	667	25	71	-46	4.0	10.6	0.8	2.2
대경권	1,909	1,919	162	172	-10	8.5	8.9	5.1	5.4
대구	970	896	116	43	74	12.0	4.8	3.7	1.3
경북	939	1,023	45	129	-84	4.8	12.6	1.4	4.1
부경권	2,503	2,489	211	196	14	8.4	7.9	6.7	6.2
부산	1,286	1,255	117	87	30	9.1	6.9	3.7	2.8
경남	1,217	1,233	93	109	-16	7.7	8.8	2.9	3.4
울산	490	499	26	36	-10	5.3	7.2	0.8	1.1
강원	591	588	19	17	2	3.2	2.9	0.6	0.5
전북	645	648	11	13	-2	1.7	2.0	0.3	0.4
제주	280	280	1	-	1	0.2	-	0.0	-
전국	21,684	21,684	3,166	3,166	0	14.6	14.6	100	100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통근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시도 간 통근근로자는 모두 3,66천 명이며, 이중 수도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유출과 유입 규모는 각각 2,414천 명, 2,356천 명으로 전체에서 각각 76.2%와 7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이 대부분 수도권 거주 임금근로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임금근로자의 통근권 간 이동

통근권으로 묶인 지역들은 통근권 내의 시도 간 통근근로자가 비통근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유출률과 유입률이 감소한다.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다른 통근권으로의 유출률은 각각 1.1%, 2.6%, 0.9%, 0.9%, 1.7%로 나타났다. 다른 통근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으로의 유입률은 각각 0.6%, 4.7%, 1.0%, 1.5%, 1.1%이다. 충청권의 유출률과 유입률이 높은 이유는 충청권이 수도권과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발생하는데, 두 통근권의 임금근로자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간의 임금근로자 이동과 수도권과 강원 간의 임금근로자 이동에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했다.

<표 3-3> 임금근로자의 통근권 간 이동

(단위: %)

		지역활동 임금근로자(근무지)									합계/ 유출률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 거주 임금 근로 자	수도권	98.9 (99.4)	0.9 (4.2)	0.0 (0.3)	0.0 (0.2)	0.0 (0.2)	- (0.0)	0.1 (2.3)	0.0 (0.4)	- (-)	100/ 1.1
	충청권	2.2 (0.4)	97.4 (95.3)	0.1 (0.1)	0.1 (0.1)	0.0 (0.0)	- (-)	0.1 (0.5)	0.2 (0.6)	- (-)	100/ 2.6
	광전권	0.1 (0.0)	0.1 (0.0)	99.1 (99.0)	0.0 (0.0)	0.1 (0.1)	- (-)	- (0.0)	0.5 (0.9)	- (-)	100/ 0.9
	대경권	0.1 (0.0)	0.1 (0.1)	0.0 (0.0)	99.1 (98.5)	0.6 (0.4)	0.2 (0.7)	0.0 (0.0)	0.0 (0.0)	- (-)	100/ 0.9
	부경권	0.1 (0.0)	0.0 (0.0)	0.1 (0.2)	0.2 (0.3)	98.3 (98.9)	1.3 (6.4)	0.0 (0.0)	- (-)	- (-)	100/ 1.7
	울산	0.1 (-)	0.0 (0.0)	- (-)	3.0 (0.8)	2.2 (0.4)	94.7 (92.8)	- (-)	- (-)	- (-)	100/ 5.3
	강원	2.5 (0.1)	0.5 (0.1)	- (-)	0.2 (0.1)	0.0 (-)	0.0 (0.0)	96.8 (97.2)	0.0 (0.0)	- (-)	100/ 3.2
	전북	0.1 (0.0)	0.8 (0.2)	0.7 (0.4)	- (-)	0.1 (0.0)	- (-)	- (-)	98.3 (98.0)	- (-)	100/ 1.7
	제주	0.1 (-)	0.1 (0.0)	0.1 (0.0)	- (-)	- (-)	- (-)	- (-)	- (-)	99.8 (100)	100/ 0.2
합계/유입률		(100) 0.6	(100) 4.7	(100) 1.0	(100) 1.5	(100) 1.1	(100) 7.2	(100) 2.8	(100) 2.0	(100) 0.0	100 (100)

통근권으로 묶으면 통근권 내 시도 간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통근근로자 규모는 3,166천 명에서 320천 명으로 감소했다. 통근권 간 통근근로자 규모는 320천 명 중 수도권과 충청권 간 임금근로자 이동이 가장 많고(154천 명), 그다음이 대경권, 부경권 및 울산 간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많았고(78천 명), 나머지 통근권 간에는 통근규모가 적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통근근로자 순유출 규모는 58천 명이며, 대부분 충청권으로 순유출(50천 명)되었다. 충청권의 순유입 규모는 51천 명이고, 대부분 수도권에서 순유입(50천 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경권의 순유입 규모는 10천 명이고, 울산에서 11천 명이 순유입되고, 부경권으로 4천 명이 순유출되었다. 부경권은 14천 명이 순유출되었는데, 울산으로 21천 명이 순유출되고, 대경권에 4천 명이 순유입되었다. 울산의 경우 임금근로자 순유입 규모는 10천 명이며, 부경권에서 21천 명이 순유입되고, 대경권으로 11천 명이 순유출되었다. 광전권, 강원, 전북, 제주는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낮아 순유출과 순유입 규모가 적는데, 이들 지역의 통근근로자 표본 규모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요약하면 수도권은 임금근로자가 주로 충청권으로 순유출되고, 충청권은 수도권으로부터 임금근로자가 유입된다. 대경권은 임금근로자가 울산에서 순유입되고, 부경권으로 순유출되고, 부경권은 대경권에서 순유입, 울산으로 순유출되었다. 울산은 부경권에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고, 대경권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통근권 간 임금근로자의 유입과 유출

(단위: 천 명)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유출	순유출
수도권		102	4	4	4	0	13	3	-	130	58
충청권	52		1	2	0	-	3	4	-	62	-51
광전권	2	1		0	2	-	0	6	-	11	-1
대경권	2	1	0		10	4	0	0	-	18	-10
부경권	1	1	2	6		32	0	0	-	42	14
울산	0	0	-	15	11		-	-	-	26	-10
강원	15	3	-	1	0	0		0	-	19	2
전북	1	5	4	-	0	-	-		-	11	-2
제주	0	0	0	-	-	-	-	-		1	1
유입	72	113	12	28	28	36	17	13	-	320	0
순유입	-58	51	1	10	-14	10	-2	2	-1		0

주)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은 반올림으로 인해 단위 미만을 나타냄

제3절 가구의 특성과 성별 통근율 비교

통근근로자 표본 규모가 적은 지역을 제외하고, 통근권의 가구 특성별로 남성과 여성의 통근율을 비교하였다. 모든 통근권에서 1인 가구보다는 2인 이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에 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통근율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전국과 수도권의 여성은 유배우자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무배우자인 임금근로자의 통근률이 더 높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유배우자인 임금근로자의 통근률이 높았다. 통근근로자 거주지역 비중이 수도권에 높아서, 전국과 수도권은 같은 특성을 가진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는 모든 가구 특성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통근율이 높았다. 제4장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에서 살펴보겠지만, 비통근근로자에 비해 통근근로자의 1인당 임금이 더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의 통근율이 높은 등 통근근로자의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고, 임금도 높은 특성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3-5> 가구 특성별 성별 통근율(유출률)

가구 특성		전국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인가구 여부	아님	19.3	11.7	26.5	17.1	13.8	7.0	10.4	6.3	11.7	6.2	12.0	4.7
	맞음	11.5	8.0	15.4	12.4	8.4	4.0	6.3	3.5	6.9	4.3	9.8	3.7
배우자 유무	있음	19.7	10.7	27.3	15.8	14.6	7.4	10.6	6.5	12.1	6.3	12.8	5.1
	없음	14.3	11.2	19.7	16.7	8.9	4.9	7.7	4.6	8.4	5.0	9.6	3.7
18세 미만 자녀	있음	22.4	11.9	31.0	17.5	17.5	9.3	11.7	7.5	13.6	7.3	14.5	5.6
	없음	15.9	10.7	22.1	15.9	10.5	5.4	8.8	5.2	9.7	5.3	10.6	4.1

제4절 소결

임금근로자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점도시인 특광역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지역 간 통근권을 형성한다. 광역 통근권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묶을 수 있다.

둘째,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은 거점도시인 서울로 인천과 경기의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고, 비수도권은 거점 도시인 광역시에서 통근권 내 도지역으로 순유출되었다.

셋째,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통근근로자 규모는 3,166천 명인데, 수도권 내 서울, 인천, 경기 간 임금근로자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각각 2,414천 명, 2,356천 명으로 유출비중은 76.2%, 유입비중은 74.4%로 통근근로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넷째,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이동은 대부분 같은 통근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근권으로 묶으면 통근근로자 규모가 감소(3,166천 명에서 320천 명)한다. 수도권 거주 임금근로자가 충청권으로 순유입되고, 대경권은 부경권으로, 부경권은 울산으로, 울산 거주 임금근로자는 대경권으로 순유입되었다.

다섯째, 통근근로자를 가구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통근율이 높고, 남성과 여성 모두 1인 가구보다는 2인 이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있는 가구에 속한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여성을 제외하고는 배우자가 없는 임금근로자보다 배우자가 있는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게 나타났다. 제4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비통근근로자 대비 통근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의 안정성과 높은 임금소득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 4 장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과 특성

제1절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

임금근로자의 이동과 임금소득의 이동은 유입과 유출의 방향만 다르다. 해당 지역 거주 임금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유출) 그 지역 사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은 해당 지역 거주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유입)이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으로 다른 지역 거주 임금근로자가 유입된 경우, 유입된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만큼 해당 지역의 사업체가 지급한 임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다. 따라서 제3장에서 살펴본 임금근로자의 시도 간 및 통근권 간 이동 특성은 유입과 유출 방향만 달리한 채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울 소재 사업체가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소득은 경기도(2,446십억 원)와 인천(362십억 원)으로 순유출되었다. 이에 비해 대전(1십억 원), 세종(18십억 원), 충북(21십억 원), 충남(16십억 원)에서 서울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인천은 서울(362십억 원)과 경기(210십억 원)에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경기는 서울에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인천으로 순유출되었다. 경기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대전(20십억 원), 세종(9십억 원), 충북(32십억 원), 충남(89십억 원)으로부터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서울과 경기를 합치면 충남(105십억 원), 충북(53십억 원), 세종(27십억 원), 대전(21십억 원) 순으로 임금소득이 서울과 경기로 순유입되었다. 정리하면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고,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근무해, 서울과 경기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대전은 세종(59십억 원)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고, 충북(33십억 원)과 충남(83십억 원)에서 임금소득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대전과 충북(29십억 원), 충남(29십억 원)에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충북은 대전과 세종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고, 충남(10십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충남은 대전(83십억 원), 세종(29십억 원), 충북(10십억 원)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었다. 요약하면 대전과 세종에 거주하면서, 충북과 충남에서 근무하고, 세종에 거주하면서 대전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는 충남(105십억 원), 충북(53십억 원), 세종(27십억 원), 대전(21십억 원) 순으로 임금소득을 서울과 경기도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근무하는 임금근로자 규모는 932천 명으로 충북(698천 명), 대전(632천 명), 세종(148천 명)보다 많고, 수도권과 충청권 임금근로자에게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공급하고 있다. 충북도 수도권과 대전, 세종에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공급하고 있다.

광주는 다른 시도에서 임금소득이 249십억 원이 순유입되고, 이중 대부분이 전남(162십억 원)에서 순유입되고, 일부가 전북(11십억 원)에서 순유입되었다. 전남은 광주와 전북(5십억 원)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었다.

대구의 임금소득 순유입 금액은 391십억 원이고, 대부분 경북(254십억 원)에서 순유입되고, 경남(15십억 원)과 부산(3십억 원)에서도 순유입되었다. 경북은 임금소득이 대구, 울산(40십억 원), 부산(5십억 원)으로 순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경남(68십억 원)과 울산(60십억 원), 경북(5십억 원) 순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대구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었다. 경남은 부산, 대구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고, 울산에서 30십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울산은 50십억 원이 다른 시도로 순유출되었는데, 부산(60십억 원), 경남(30십억 원)으로 순유출되고, 경북에서 40십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대구와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출되고, 경북, 경남, 울산은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었다. 이로 인해 대구(273십억 원)와 부산(130십억 원)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경북(298십억 원), 경남(54십억 원), 울산(51십억 원)은 다른 지역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었다.

임금소득이 시도 간 이동한 임금의 총액은 11,635십억 원이다. 수도권의 시도 간 유출과 유입 임금총액은 각각 9,027십억 원과 8,779십억 원으로 전국의 유입 또는 유출 총액의 77.6%와 75.5%를 차지했다.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률은 18.2%로 임금근로자의 통근율 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3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보다 높기 때문이다.

<표 4-1>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 규모

(단위: 십억 원)

		지역활동 임금근로자(근무지)																	합계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거주 임금근로자	수도권	서울	250	2,060	17	28	30	44	3	3	6	2	1	5	-	23	6	-	2,478	
		인천	612	646	1	0	3	5	1	0	0	-	0	2	-	0	-	-	1,271	
		경기	4,506	436	24	15	61	179	3	6	2	4	11	1	1	24	5	-	5,278	
		대전	16	0	4	67	54	112	3	1	0	5	-	-	-	0	7	-	269	
		세종	10	1	6	126	56	54	0	1	0	1	0	-	-	0	4	-	260	
		충북	9	0	29	21	27	29	-	0	0	1	-	0	-	9	1	-	126	
		충남	28	3	90	29	25	19	0	0	0	1	0	0	-	-	4	-	199	
		광전권	광주	2	-	4	1	-	0	1	224	0	-	-	-	-	-	16	-	249
			전남	2	0	0	0	-	-	0	62	0	-	0	6	-	0	5	-	75
		대경권	대구	3	1	1	-	-	-	0	-	360	4	21	1	-	1	-	391	
			경북	2	-	0	0	0	3	1	0	0	106	3	5	13	0	0	135	
		부경권	부산	1	-	1	-	-	-	1	1	1	8	309	85	-	-	-	407	
			경남	2	-	-	2	-	1	-	1	4	6	4	241	41	1	0	303	
			울산	0	-	1	-	-	0	0	-	-	0	53	25	11	-	-	91	
			강원	20	1	29	0	0	10	-	-	-	4	-	0	0	-	0	65	
			전북	2	-	-	4	0	1	12	5	10	-	-	2	-	-	-	35	
			제주	-	0	1	-	-	1	-	0	-	-	-	-	-	-	-	2	
		합계		5,213	693	2,872	225	162	239	438	79	250	125	444	286	362	141	58	48	11,635

주) '-' 표시는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이고, '0'은 반올림으로 인해 단위 미만을 나타냄

<표 4-2> 임금소득의 시도별 이동 현황

(단위: 십억 원, %)

시도	임금소득 총액		임금소득			임금소득 이동		임금이동비중	
	주거지 ①	근무지 ②	유입 ③	유출 ④	순유입 ③-④	유입률 ③/①	유출률 ④/②	유입	유출
수도권	36,513	36,264	9,027	8,779	249	24.7	24.2	77.6	75.5
서울	13,850	16,585	2,478	5,213	-2,735	17.9	31.4	21.3	44.8
인천	3,753	3,175	1,271	693	578	33.9	21.8	10.9	6.0
경기	18,910	16,505	5,278	2,872	2,406	27.9	17.4	45.4	24.7
충청권	6,818	7,028	854	1,064	-209	12.5	15.1	7.3	9.1
대전	1,928	1,884	269	225	44	14.0	12.0	2.3	1.9
세종	586	487	260	162	99	44.5	33.2	2.2	1.4
충북	1,834	1,947	126	239	-113	6.9	12.3	1.1	2.1
충남	2,471	2,710	199	438	-239	8.1	16.2	1.7	3.8
광전권	3,262	3,266	324	329	-5	9.9	10.1	2.8	2.8
광주	1,650	1,480	249	79	170	15.1	5.3	2.1	0.7
전남	1,612	1,787	75	250	-174	4.7	14.0	0.6	2.1
대경권	5,139	5,182	525	568	-43	10.2	11.0	4.5	4.9
대구	970	896	116	43	74	12.0	4.8	3.7	1.3
경북	939	1,023	45	129	-84	4.8	12.6	1.4	4.1
부경권	6,742	6,679	711	648	63	10.5	9.7	6.1	5.6
부산	2,586	2,320	391	125	266	15.1	5.4	3.4	1.1
경남	2,553	2,862	135	444	-309	5.3	15.5	1.2	3.8
울산	1,534	1,584	91	141	-50	5.9	8.9	0.8	1.2
강원	1,493	1,487	65	58	7	4.3	3.9	0.6	0.5
전북	1,630	1,643	35	48	-13	2.2	3.0	0.3	0.4
제주	709	707	2	-	2	0.3	-	0.0	-
전국	63,839	63,839	11,635	11,635	0	18.2	18.2	100.0	100.0

제2절 임금소득의 통근권 간 이동

통근권으로 묶인 지역들은 통근권 내의 시도 간 임금소득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통근근로자 규모가 3,166천 명에서 320천 명으로 감소하고,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금액도 11,635십억 원에서 1,203십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으로의 다른 통근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 유입률은 각각 1.4%, 3.5%, 1.2%, 1.1%, 2.4%로 나타났다.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임금소득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률은 0.7%, 6.3%, 1.3%, 2.0%, 1.5%이다.

<표 4-3> 임금소득의 통근권 간 이동

(단위: %)

		지역활동 임금소득(근무지)									합계/ 유입률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지역 거주 임금 소득	수도권	98.6 (99.3)	1.1 (5.8)	0.0 (0.5)	0.0 (0.3)	0.1 (0.3)	- (0.0)	0.1 (3.2)	0.0 (0.7)	- (-)	100/ 1.4
	충청권	2.9 (0.5)	96.5 (93.7)	0.1 (0.2)	0.1 (0.2)	0.0 (0.0)	- (-)	0.1 (0.6)	0.2 (1.0)	- (-)	100/ 3.5
	광전권	0.2 (0.0)	0.1 (0.1)	98.8 (98.7)	0.0 (0.0)	0.2 (0.1)	- (-)	- (0.0)	0.6 (1.3)	- (-)	100/ 1.2
	대경권	0.1 (0.0)	0.1 (0.1)	0.0 (0.0)	98.9 (98.0)	0.7 (0.5)	0.3 (0.9)	0.0 (0.0)	0.0 (0.1)	- (-)	100/ 1.1
	부경권	0.1 (0.0)	0.1 (0.0)	0.1 (0.2)	0.3 (0.4)	97.6 (98.5)	1.9 (8.0)	0.0 (0.1)	- (0.0)	- (-)	100/ 2.4
	울산	0.1 (-)	0.0 (-)	- (-)	3.5 (1.0)	2.4 (0.6)	94.1 (91.1)	- (-)	- (-)	- (-)	100/ 5.9
	강원	3.4 (0.1)	0.7 (0.1)	- (-)	0.2 (0.1)	0.0 (-)	0.0 (0.0)	95.7 (96.1)	0.0 (0.0)	- (-)	100/ 4.3
	전북	0.1 (-)	1.1 (0.2)	0.9 (0.5)	- (-)	0.1 (0.0)	- (-)	- (-)	97.8 (97.1)	- (-)	100/ 2.2
	제주	0.2 (-)	0.1 (0.0)	0.0 (0.0)	- (-)	- (-)	- (-)	- (-)	- (-)	99.7 (100)	100/ 0.2
합계/유출률		(100) 0.7	(100) 6.3	(100) 1.3	(100) 2.0	(100) 1.5	(100) 8.9	(100) 3.9	(100) 2.9	(100) 0.0	100 (100)

수도권의 임금소득 순유입 금액은 249십억 원이며, 대부분 충청권에서 순유입(210십억 원)되었다. 충청권의 순유출 금액은 209십억 원이고, 대부분 수도권으로 순유출되었다. 대경권의 순유출 금액은 43십억 원이고, 울산(39십억 원), 수도권(9십억 원), 충청권(5십억 원)으로 순유출되고, 부경권에서 11십억 원이 순유입되었다. 부경권은 63십억 원이 순유입되었는데, 울산에서 89십억 원이 순유입되고, 대경권으로 11십억 원이 순유출되었다. 울산의 경우 임금소득 순유출 금액은 50십억 원이며, 부경권(89십억 원)으로 순유출되고, 대경권(39십억 원)에서 순유입되었다. 광전권, 강원, 전북, 제주는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낮아 임금소득의 유입률과 유출률이 낮다. 이들 지역의 통근근로자 표본 규모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요약하면 충청권의 임금소득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었다. 울산의 임금소득은 부경권으로 순유입되고, 부경권의 임금소득은 대경권으로 순유입되었다. 그리고 대경권의

임금소득은 울산으로 순유입되었다. 그리고 임금소득의 순유출은 이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했다.

<표 4-4> 임금소득의 유입과 유출 지역별 분포

(단위: 십억 원)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유입	순유입
수도권		407	16	15	19	1	48	11	0	517	249
충청권	197		5	9	0	0	9	16	0	236	-209
광전권	7	3		1	6	0	0	21	0	38	-5
대경권	6	4	0		33	14	0	1	0	59	-43
부경권	4	3	6	21		126	1	0	0	161	63
울산	1	0	0	53	37		0	0	0	91	-50
강원	50	10	0	4	0	0		0	0	65	7
전북	2	17	15	0	2	0	0		0	35	-13
제주	1	1	0	0	0	0	0	0		2	2
유출	268	446	43	102	98	141	58	48	0	1,203	
순유출	-249	209	5	43	-63	50	-7	13	-2		0

제3절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 비교

통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소득이 비통근근로자보다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통근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51.41만 원(전북)에서 311.3만 원(울산)의 분포를 보였고, 통근근로자는 316.7만 원(제주)에서 374.0만 원(수도권)의 분포로 나타났다.

<표 4-5>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 임금소득

(단위: 만 원)

	전국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전체	294.4	312.2	288.9	268.9	269.2	269.4	313.3	252.8	252.7	252.7
비통근	281.9	296.2	279.9	262.6	264.1	263.1	311.3	249.9	251.4	252.6
통근	367.5	374.0	372.2	344.4	325.0	337.5	348.5	341.6	327.0	316.7

지역고용조사에 있는 임금근로자의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로 통근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통근율을 <표 4-6>에서 비교했다. 모든 지역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시간제 근로자에 비해 전일제근로자가, 종사자규모가 큰 사업체에 근무할수록,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의 통근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소득이 높은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비통근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표 4-6>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 통근율

개인/일자리 특성			전국	수도권	충청권	광전권	대경권	부경권
전체			14.6	20.6	9.7	7.8	8.5	8.4
개 인	성별	남성	17.6	24.3	12.4	9.5	10.7	11.6
		여성	10.9	16.2	6.3	5.7	5.8	4.5
	교육정도	고졸 이하	9.8	14.1	6.2	4.6	6.1	7.2
		초대졸 이상	18.7	25.7	13.0	10.9	10.7	9.7
일 자 리	근속기간	4년 이하	13.2	18.8	8.1	6.5	7.5	7.3
		5~9년	16.4	22.7	11.1	7.7	9.6	9.6
		10년 이상	17.6	25.3	13.6	11.1	10.3	10.9
	근로시간	전일제	15.5	21.4	10.5	9.2	9.1	9.4
		시간제	13.2	19.5	8.7	5.0	7.2	7.3
	종사자 규모	10인 미만	10.6	15.8	6.1	5.3	6.7	6.0
		10~299명	15.3	21.3	10.6	9.1	9.2	9.2
		300명 이상	21.2	28.2	14.0	9.9	10.7	12.3
	종사상 지위	상용직	16.6	22.9	11.3	9.4	9.7	9.8
		임시일용직	9.3	14.1	4.9	4.2	5.5	5.3

제4절 소결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고 받은 임금소득은 해당 지역의 임금소득이 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의 이동과 임금소득의 이동은 반대 방향으로 이뤄진다. 즉, 임금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순유출되면 임금소득이 다른 지역으로부터 순유입된다.

둘째,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은 거점도시인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되고, 비수도권은 거점도시인 광역시로 통근권 내 도지역의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서울로 세종, 충북, 충남의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경기로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의 임금소득이 순유입되었다. 울산으로 경북의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울산의 임금소득은 부산과 경남으로 순유출되었다.

셋째, 시도 간 임금소득 이동 총액은 11,635십억 원인데, 수도권 내 서울, 인천, 경기 간 임금소득의 유입과 유출 규모가 각각 9,027십억 원, 8,779십억 원으로 유출비중은 77.6%, 유입비중은 75.5%로 대부분 수도권 내 시도 간에 임금소득의 이동이 발생했다.

넷째,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은 대부분 같은 통근권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근권으로 묶으면 지역 간 임금소득 이동 총액이 감소(11,635십억 원에서 1,203십억 원)했다. 수도권으로 충청권의 임금소득이 순유입되고, 부경권의 임금소득이 대경권, 울산의 임금소득이 부경권, 대경권의 임금소득이 울산으로 순유입되었다.

다섯째, 비통근근로자에 비해 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근근로자를 개인 및 일자리 특성으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 근무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 5 장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과 지역경제 영향

제1절 개요

지금까지 임금근로자의 통근으로 인한 임금소득의 지역 간 유입과 유출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역 간 임금소득의 이동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소득통계에서 지역총소득은 지역총생산에서 지역 외로부터 수취한 본원소득을 더하고 지역 외로 지급한 본원소득을 차감하여 구한다(지역소득 보도자료, 통계청). 즉 지역총소득은 지역총생산에 지역외순수취 본원소득을 더하여 구한다. 지역소득통계의 추계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임금근로자의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은 해당 지역의 사업체에서 임금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 중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소득을 더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 받은 임금소득을 차감하여 구한다. 해당 지역의 지역외순수취 임금소득이 '0'보다 크다면, 해당 지역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돼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이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보다 커진다. 지역외순수취 임금소득이 '0'보다 작다면, 다른 지역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출돼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이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보다 작아진다.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해 지역총생산(GRDP)에 포함되는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과 지역총소득(GRNI)에 포함되는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이 전국 수준에서는 일치하지만, 지역별로는 불일치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과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 각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순위가 바뀔 정도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임금총액뿐만 아니라 1인당 임금소득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인당 지역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은 지역총생산과 지역총소득 각각을 동일하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수로 나누어 구한다. 지역계정의 1인당 추계방법과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구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가 지급한 임금총액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총액을 각각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1인

당 사업체 지급 임금소득과 1인당 임금근로자 수령 임금소득을 구하였다. 1인당 임금소득은 사업체 지급 임금총액을 지역활동인구 개념의 임금근로자인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전체 임금근로자로 나눈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과, 해당 지역 거주 임금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총액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체 임금근로자로 나눈 거주지 기준 1인당 임금을 구하고, 이 둘을 비교하였다.

여기에서는 임금총액,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소득 그리고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임금소득으로 나누어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절 지역별 임금총액 비중과 순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근은 대부분 통근권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도 통근권 내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따라서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각각에서 구한 전국 임금총액에서 지역별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과 순위의 변화는 통근권 내 시도 간 임금소득의 이동 때문이다.

수도권은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이 순유출된다. 전국 임금총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무지 기준 26.0%에서 거주지 기준 21.7%로 4.3%p 감소한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0.9%p(5.0%→5.9%), 3.7%p(25.9%→29.6%) 증가했다. 임금총액 순위를 보면 서울은 근무지 기준 1위에서 거주지 기준 2위가 되었고, 인천은 5위에서 3위, 경기도는 2위에서 1위가 되었다.

비수도권의 통근권은 수도권과 달리 거점도시인 광역시는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에 비해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이 높고, 도지역은 이와 반대이다. 따라서 근무지 기준에 비해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의 증가와 순위 상승이 광역시에서 발생하고, 도지역은 임금총액 비중이 감소하고, 순위도 하락하였다. 광주가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 순위에 비해 거주지 임금소득 순위가 15위에서 11위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같은 통근권을 형성하는 전남이 11위에서 13위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임금총액 비중은 광주가 근무지 기준 임금소득에 비해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 비중이 0.3%p 증가, 전남은 0.3%p 감소했다. 광역시 중 울산은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이 근무지 기준에 비해 0.1%p 감소하고, 임금총액 순위도 13위에서 14위로 하락했다. 다른 시도와 통근권을 형성하지 못한 강원, 전북, 제주는 모두 임금총액 비중의 변화가 없었고, 임금총액 순위도 전북과 제주는 그대로이고, 강원만 14위에서 15위로 하락했다.

<표 5-1> 시도별 임금총액 비중 및 순위

(단위: 십억 원)

시도	임금총액		임금총액 비중			임금총액 순위			
	근무지	주거지	근무지 ①	주거지 ②	차이 (①-②)	근무지 ①	주거지 ②	차이 (①-②)	
수도권	서울	16,585	13,850	26.0	21.7	4.3	1	2	-1
	인천	3,175	3,753	5.0	5.9	-0.9	5	3	2
	경기	16,505	18,910	25.9	29.6	-3.8	2	1	1
충청권	대전	1,884	1,928	3.0	3.0	-0.1	10	9	1
	세종	487	586	0.8	0.9	-0.2	17	17	0
	충북	1,947	1,834	3.0	2.9	0.2	9	10	-1
	충남	2,710	2,471	4.2	3.9	0.4	7	8	-1
광전권	광주	1,480	1,650	2.3	2.6	-0.3	15	11	4
	전남	1,787	1,612	2.8	2.5	0.3	11	13	-2
대경권	대구	2,320	2,586	3.6	4.1	-0.4	8	6	2
	경북	2,862	2,553	4.5	4.0	0.5	6	7	-1
부경권	부산	3,247	3,369	5.1	5.3	-0.2	4	5	-1
	경남	3,431	3,373	5.4	5.3	0.1	3	4	-1
울산	1,584	1,534	2.5	2.4	0.1	13	14	-1	
강원	1,487	1,493	2.3	2.3	0.0	14	15	-1	
전북	1,643	1,630	2.6	2.6	0.0	12	12	0	
제주	707	709	1.1	1.1	0.0	16	16	0	
전국	63,839	63,839	100	100	0				

지역 간 임금소득의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통근권별로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의 통근이 대부분 통근권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무지 기준과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통근권 간 임금근로자의 이동은 수도권과 충청권 간 이동이 가장 많아, 수도권은 0.4%p 증가하고, 충청권은 0.3%p 감소했다. 대경권, 부경권, 울산 간에도 유의미한 임금근로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근무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에 비해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이 대경권과 울산은 0.1p 감소하고, 부경권은 0.1%p 증가했다. 임금총액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으로 임금소득이 순유입됨으로써 수도권의 근무지 기준 임금총액 비중은 56.8%에서 57.2%로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43.2%에서 42.8%로 감소했다.

<표 5-2> 통근권별 임금총액 및 순위

(단위: 십억 원)

통근권	임금총액		비중			순위		
	근무지	주거지	근무지	주거지	차이	근무지	주거지	차이
수도권	36,264	36,513	56.8	57.2	-0.4	1	1	0
충청권	7,028	6,818	11.0	10.7	0.3	2	2	0
광전권	3,266	3,262	5.1	5.1	0.0	5	5	0
대경권	5,182	5,139	8.1	8.0	0.1	4	4	0
부경권	6,679	6,742	10.5	10.6	-0.1	3	3	0
울산	1,584	1,534	2.5	2.4	0.1	7	7	0
강원	1,487	1,493	2.3	2.3	0.0	8	8	0
전북	1,643	1,630	2.6	2.6	0.0	6	6	0
제주	707	709	1.1	1.1	0.0	9	9	0
전국	63,839	63,839	100.0	100.0	0.0			

제3절 지역별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과 순위

지역별로 근무지 기준 임금총액을 근무지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로 나눈 근무지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과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로 나눈 주거지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을 비교하였다. 비통근근로자에 비해 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높기 때문에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된 지역은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 보다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출된 지역은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보다 낮았다.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으로 27만 8천 원이 상승했고, 경기(9만 2천 원), 광주(8만 2천 원), 대구(7만 8천 원) 순으로 상승했다. 광주와 통근권을 형성하는 전남(8만 1천 원)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대구와 같은 통근권인 경북(8만 원)이 다음으로 많이 하락했다. 임금총액의 지역 간 이동과 동일하게 서울은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이 감소하고, 인천과 경기는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거점도시인 광역시는 증가하고, 도지역은 대체로 감소했다. 광역시 중에서 예외적으로 대전은 근무지 기준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이 감소(3만 4천 원)했고, 비수도권 중에서 도지역은 강원도와 제주가 증가했는데, 이 지역은 통근 임금근로자 표본 규모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1인당 임금 순위를 보면, 근무지 기준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인천과 광주로 인천은 10위에서 7위로 상승했고, 광주는 11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경북은 7위에서 11위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표 5-3> 시도별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 및 순위

(단위: 만 원)

시도	1인당 임금			순위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수도권	서울	334.9	329.5	5.4	1	2	-1
	인천	277.5	281.5	-4.0	10	7	3
	경기	297.9	307.1	-9.2	5	4	1
충청권	대전	298.0	294.6	3.4	4	5	-1
	세종	327.8	355.7	-27.8	2	1	1
	충북	278.9	273.7	5.2	8	10	-2
광전권	충남	290.6	283.6	7.0	6	6	0
	광주	270.3	278.5	-8.2	11	8	3
대경권	전남	267.9	259.8	8.1	12	14	-2
	대구	258.9	266.7	-7.8	13	12	1
부경권	경북	279.8	271.8	8.0	7	11	-4
	부산	258.7	262.1	-3.4	14	13	1
	경남	278.2	277.0	1.2	9	9	0
울산	317.1	313.3	3.8	3	3	0	
강원	252.7	252.8	-0.2	16	15	1	
전북	253.8	252.7	1.1	15	17	-2	
제주	252.6	252.7	-0.1	17	16	1	
전국	294.4	294.4	0.0				

통근권별로 보면 시도별보다 통근근로자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과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의 차이도 작게 나타났다. 광주전남권이 8만 2천 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고, 대경권(7만 8천 원), 부산경남권(3만 4천 원) 순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이 5만 4천 원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울산(3만 8천 원), 충청권(3만 4천 원) 순으로 하락했다.

1인당 임금 순위는 대부분 변동이 없었고, 하위권에 있는 강원, 전북, 제주 간 순위변동이 있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지역은 통근근로자 표본 규모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5-4> 통근권별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 및 순위

(단위: 만 원)

통근권	1인당 임금			순위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수도권	334.9	329.5	5.4	1	1	0
충청권	298.0	294.6	3.4	3	3	0
광전권	270.3	278.5	-8.2	4	4	0
대경권	258.9	266.7	-7.8	5	5	0
부경권	258.7	262.1	-3.4	6	6	0
울산	317.1	313.3	3.8	2	2	0
강원	252.7	252.8	-0.2	8	7	1
전북	253.8	252.7	1.1	7	9	-2
제주	252.6	252.7	-0.1	9	8	1
전국	294.4	294.4	0.0			

제4절 지역별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과 순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1인당 지역총소득을 구하는 방법을 빌려와, 근무지 기준과 주거지 기준 임금총액을 모두 각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연령인구인 1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1인당 임금을 구하였다.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에 비해 15세 인구의 1인당 임금은 근무지 기준과 주거지 기준 간에 차이가 더 많이 발생했다. 임금총액과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과 같이 수도권은 근무지 기준 1인당 임금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이 서울(32만 4천 원)은 감소하고, 인천(22만 3천 원)과 경기(20만 2천 원)는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거점도시인 광역시는 상승하고, 도지역은 감소했다. 다만, 광역시 중 울산은 165만 9천 원에서 160만 6천 원으로 5만 2천 원 감소했다.

1인당 임금 순위를 살펴보면, 근무지 기준에 비해 주거지 기준 1인당 임금 순위가 광주와 대구가 가장 많이 상승했고, 각각 13위에서 8위, 15위에서 10위로 상승했다. 경북은 8에서 15위로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에 비해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지역별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5>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 및 순위

(단위: 만 원)

시도	1인당 임금			순위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수도권	서울	196.3	164.0	32.4	1	2	-1
	인천	122.7	145.0	-22.3	9	6	3
	경기	138.4	158.6	-20.2	6	4	2
충청권	대전	146.3	149.7	-3.4	4	5	-1
	세종	154.6	186.0	-31.4	3	1	2
	충북	136.2	128.3	7.9	7	9	-2
	충남	141.7	129.2	12.5	5	7	-2
광전권	광주	115.7	129.0	-13.3	13	8	5
	전남	117.2	105.8	11.4	12	16	-4
대경권	대구	111.9	124.8	-12.8	15	10	5
	경북	123.0	109.7	13.3	8	15	-7
부경권	부산	110.7	114.8	-4.2	16	13	3
	경남	120.5	118.4	2.1	11	12	-1
울산	165.9	160.6	5.2	2	3	-1	
강원	112.1	112.6	-0.5	14	14	0	
전북	105.6	104.8	0.9	17	17	0	
제주	122.6	123.0	-0.3	10	11	-1	
전국	140.9	140.9	0.0				

통근권별로 보면, 근무지 기준에 비해 주거지 기준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이 울산(5만 2천 원), 충청권(4만 2천 원) 순으로 감소했다. 시도별보다 통근권별로는 통근 근로자 규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1인당 임금과 순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5-6> 통근권별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 및 순위

(단위: 만 원)

통근권	1인당 임금			순위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근무지①	주거지②	차이(①-②)
수도권	157.9	159.0	-1.1	2	2	0
충청권	142.1	137.9	4.2	3	3	0
광전권	116.5	116.4	0.2	6	7	-1
대경권	117.8	116.8	1.0	5	5	0
부경권	115.5	116.6	-1.1	7	6	1
울산	165.9	160.6	5.2	1	1	0
강원	112.1	112.6	-0.5	8	8	0
전북	105.6	104.8	0.9	9	9	0
제주	122.6	123.0	-0.3	4	4	0
전국	140.9	140.9	0.0			

제5절 소결

이번 장에서는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총액, 임금근로자의 1인당 임금, 임금총액을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도별로는 시도 간 임금소득의 이동으로 임금총액과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은 0~4위까지 순위변동이 발생했고,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은 0~7위까지 순위변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순위가 하락하고, 인천과 경기의 순위가 상승했다. 비수도권에는 광역시의 순위가 상승하고, 도지역의 순위가 하락했다.

둘째, 통근권 간에는 통근권 내 임금소득의 이동이 사라지기 때문에 통근권별로는 순위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광전권은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 순위가 1단계 하락했고, 부경권은 1단계 상승했다.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 순위에서 강원과 제주는 1단계 상승하고, 전북은 2단계 하락했다.

제 6 장

연구결과와 시사점

지금까지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을 시도와 통근권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가구 특성 및 성별에 따른 통근율의 차이, 개인과 일자리 특성별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1인당 임금을 비교했다. 그리고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임금총액,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임금 별로 근무지 기준과 거주지 기준 임금소득에 대해 지역 간 순위 변동을 살펴보았다.

통근과 임금소득의 시도 간 유입과 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시도들은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으로 광역통근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울산은 대경권으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출되고, 임금소득은 대경권으로부터 순유입되는 반면, 부경권에서 임금근로자가 순유입되고 임금소득은 부경권으로 순유출되어 특정한 광역통근권으로 묶기가 힘들었다. 서울과 경기 거주 임금근로자가 충청권의 시도로 순유입되고, 충청권의 임금소득이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로 순유출되었다. 대체로 거주 비용을 감안하여 통근권 내 또는 통근권 간 거주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임금근로자가 순유출되고, 임금소득은 거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순유입되었다. 수도권은 임금근로자가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에서 근무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도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통근근로자 3,166천 명 중 수도권 거주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76.2%이고, 시도 간 이동한 임금소득 11,635십억 원 중 수도권 비중이 77.6%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이동이 대부분 수도권 내 시도 간 발생했다. 수도권과 통근권을 공유하는 충청권이 통근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이동 비중이 모두 7.3%로 두 번째로 높아, 수도권과 충청권을 합한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이 각각 83.5%, 84.9%로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었다.

가구 특성별로는 1인 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는 있는 가구의 임금근로자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통근율이 높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통근율이 높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임금근로자의 통근율이 높게 나타났다. 개인 및 일자리 특성별로 통근근로자와 비통근근로자의 임금소득을 비교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시간제에 비해 전일제가, 종사자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

록, 임시일용직에 비해 상용직의 통근율이 높았다.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임금소득이 높은 임금근로자일수록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여건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은 시도별 임금총액,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 1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임금 순위에 최대 7위까지 변동을 줄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임금소득이 유입되는 수도권인 인천, 경기, 비수도권의 광역시의 순위가 상승하고, 서울과 도지역의 순위가 하락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지역통계 지표들은 지표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부문별로 분류되고 있다. 현재의 지역통계 지표체계 속에서 임금근로자의 이동은 인구부문, 임금소득의 이동은 지역소득 부문에 독립적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과 소득의 이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분류된 지표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 지표체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비수도권은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통근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도록 하여 임금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소득의 지역 외 유출규모 감소로 지역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지역의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생산, 소득, 소비, 생산 증가의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임금소득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에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지역 내 거주자에게도 좋은 일자리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소득의 지역 외 유출을 막는 정책에 매몰되기보다는, 좋은 일자리 유치와 타 지역 통근 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시도 간 이동이 대부분 수도권 내 시도 간에 발생하고, 광역통근권 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간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경권과 부경권 그리고 울산 간과 광주전남권과 전북 간에 발생하는 임금근로자와 임금소득의 이동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광역권의 지역범위를 조정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강유진. (2023).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한국은행 충북본부.
지방시대위원회. (2023).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2027”,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통계청.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Eurostat. (2013). “*Manual on regional accounts methods*”, Eurostat, European Commission..
UN.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United Nations.

Abstract**A Research on Inter-regional Mobility
of Wage Workers and Wage Income****Seunghoon, Han**

The regional active population introduced in the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in 2024 represents employed persons based on place of work (business location). This concept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the inflow and outflow of employed persons between regions by comparing it with the existing employment data based on place of residence. In regional income statistic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residence of production units and households, the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is calculated based on the location of business and the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GRNI) calculates compensation of employees based on place of residence of wage workers. And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is examined bas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atasets of compensation of employees.

By combining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wage workers in the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with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wage income in the Regional Income Statistics, this study analyzed inter-regional mobility of wage workers and wage income.

For the inter-province mobility analysis of wage workers, neighboring provinces formed commuting zones centered around the hub city as Seoul Capital Area, Chungcheong Area, Gwangju-Jeonnam Area, Daegu-Gyeongbuk Area, and Busan-Gyeongnam Area. Ulsan was not included in the commuting zones because wage workers showed a net outflow to the Daegu-Gyeongbuk Area and a net inflow from the Busan-Gyeongnam Area. In the Seoul Capital Area, wage workers living in Incheon and Gyeonggi showed a net inflow to Seoul, and in

the Non-capital Area, wage workers living in metropolitan cities showed a net inflow to neighboring provinces. These findings imply that wage workers want to live in places with better living conditions in the case of affording the cost of living. Among commuting zones, the mobility between the Seoul Capital Area and the Chungcheong Area was the most common, with wage workers showing a net inflow from the Seoul Capital Area to the Chungcheong Area, and wage income showing a net inflow from the Chungcheong Area to the Seoul Capital Area. The reasons for the highest mobility between these two areas ar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and the high proportion of knowledge industries.

Most of the inter-regional mobility of commuters (76.2%) and wage workers (77.6%) occurred between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 within the Seoul Capital Area. The commuting rate was higher among those with spouses (excluding women in Seoul Capital Area) than among those without spouses for both men and women. Per capita wages of commuters were higher than those of non-commuters, which is due to the fact that the higher number of employees, the higher commuting rate of regular workers than that of temporary and daily workers. It seems that employment stability and high wage incom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commuting rate for both men and women, regardless of household characteristics.

These research results imply that regional statistical indicators need to be produc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ators.

Key words. Regional active population, regional income, commuting, inter-province mobility

연구진

○ 한승훈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 연구진의 소속 및 직급은 연구과제 완료 시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연구보고서 2024-17

통근과 임금소득의 지역 간 이동 연구

인 쇄	2025년 3월
발 행	2025년 3월
발 행 인	김 진
발 행 처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352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Tel.(042)366-7100 Fax.(042)366-7123
홈페이지	http://sri.kostat.go.kr
ISSN(Online)	2733-4120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